

2022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공모

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대내·외 잎담배 생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자재 및 재배기술 개발, 품종 연구 시험 등 잎담배 생산과 관련한 2022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7월 8일

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 조 용 수

Ⅰ 사업 개요

1. 사 업 명 : 2022년도 영농기술연구개발사업

2. 사업목적

- 잎담배 경작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실제 경작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 지원
- 잎담배 경작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경작 농민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고, 국내 연초생산기반 안정화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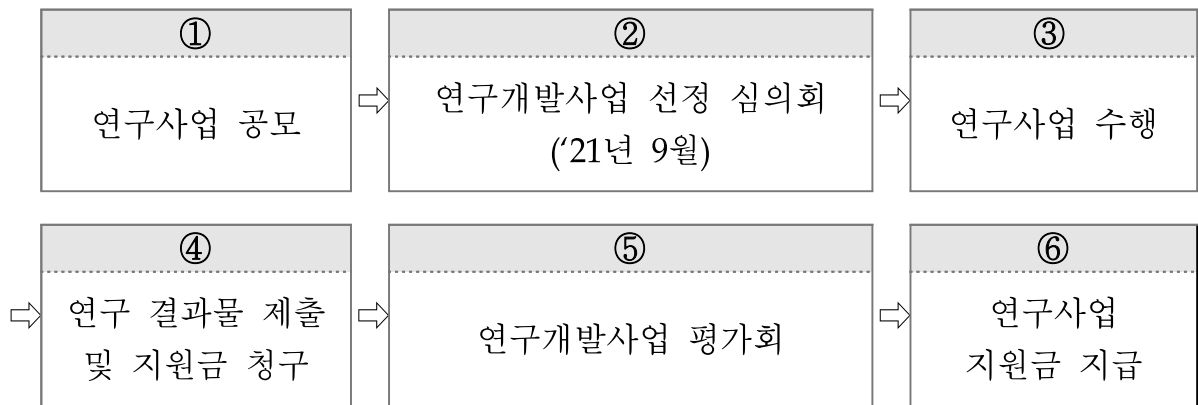
3. 공모주제

- 연초경작을 위한 생력화 기자재 개발
- 연초경작 관련 재배기술 연구개발
- 잎담배 품종관련 연구 시험
-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
- 기타 잎담배 생산과 관련한 연구과제

4. 주요 일정

- 공모기간 : 2021. 7. 8(목) ~ 8. 31(화)
- 과제심의 : 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('21년 9월)
- 결과발표 : 사업예산 확정(2022년 1월초) 후, 연구사업자에게 개별 통보

<사업수행 절차>



5. 공모방법 및 접수처

- 공모방법 : 우편, 팩스, 전자메일 등
- 접수처

담당자	연초생산안정화재단 사업관리팀 김두봉 주임		
주소	(우34014)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55		
전화번호	042-671-0084	팩스번호	042-671-0089
이메일	ft6012@hanmail.net		
홈페이지	http://www.tpsfund.or.kr		

② 세부 추진 계획

1. 연구사업 공모

- 연구개발사업 신청서[서식 제1호]와 사업계획서[서식 제2호]를 작성하여 재단 사업관리팀에 제출
 - 연구성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경작농민, 산업체, 대학 및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공동연구자로 하여 참여 가능
 -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,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기연구 또는 장기연구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

구 분	기간 및 내용	비 고
단기연구	연구기간 1년 이내에 결과도출이 가능한 연구과제	1년 이하
장기연구	연구목적 달성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거나 다년간의 반복시험이 필요한 연구과제	1년 초과

2. 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회

- 사업 선정
 -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과제와 기 수행 연구 사업의 중복성 검토
 - 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*의 심의를 거쳐, 2022년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, 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안 반영

<연구개발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>

구 분	심의의원
연초재단	사무국장, 사업관리팀장, 사업관리 담당자 1인
엽연초중양회	업무담당자 1인
(주)KT&G	업무담당자 1인

-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구 과제는 재단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 승인을 통해 2022년도 연구 개발 사업으로 최종 확정

심의 내용

- 연구과제 심의·선정 및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3. 연구사업 수행

사업 수행

-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사업자는 협약서 [서식 제3호] 제출 후,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 개발 사업 수행
- 연구사업자는 재단에서 요청할 경우, 중간보고서[서식 제4호] 및 관련자료 제출
- 연구사업 수행 중 사업 계획의 변경 필요한 경우, 연구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

연구 수행상태 점검

-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재단은 연구 개발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사업 수행상태 수시 현장 점검

4. 연구 결과물 제출 및 지원금 청구

연구 결과물 제출

- 연구사업자는 매연도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[서식 제4호]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
- 연구결과 보고서는 시험데이터, 사진자료, 연구성과 및 실적,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
- 연구결과 제출이 완료되면, 재단은 “연구개발사업 평가회”를 개최하여 연구 사업별 결과평가 및 연구비 지원금 지급

□ 연구 사업비 지원금 청구

- 연구개발비 지원금은 매연도 연구과제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되어야 함
- 연구사업자는 매연도 사업종료 후,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서 [서식 제5호, 제6호, 제7호] 및 관련서류(연구비 지출관련 적격 증빙 등)를 재단으로 제출

<증빙자료 예>

구 분	내 용
인건비	인건비 지급내역(통장사본, 송금내역), 작업일지(작업내역 및 인부 서명) 등
토지임차료	토지임차 계약서, 임차료 지급내역
연구개발품 구입 및 제작비	신용카드 영수증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

5. 연구개발사업 평가회

□ 연구 성과 평가 및 지원금 결정

- 연구개발사업 평가항목
 - 연구 성과 달성 여부
 - 추가적인 연구 필요 여부
 -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보급
 -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판단
 - 연구 사업 지원금 지급 규모 결정 등
- 연구사업자가 연구결과를 직접발표
- 우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시상

6. 연구사업 지원금 지급

- 지원금은 당해년도 연구과제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사업 평가회 결과에 따라 지급
- 연구사업 지원금은 매연도 계획에 따른 사업 종료 후,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장기 연구의 경우 매연도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
 - * 연구결과제출/지원금 신청 → 사업평가/지원금 심사 → 연구비 지급(연말)
-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제작비, 연구포지 임차료, 시험 앞담배 보상금, 용역비 등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성 경비만 지원
 - 연구비 지원금 청구 시, 관련 증빙자료 함께 제출

구분	지급처	지급내용	비고
연구개발비	연구사업자	재료구입비, 제작비, 설치비 등	-
연구용역비		연구용역 관련 비용	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
인건비		연구 수행에 투입된 고용인건비	<u>연구사업자 본인 인건비 제외</u>
시험앞담배 보상금	경작자	연구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앞담배 손해에 대한 보상금	-
기타	연구사업자	기타 연구사업 수행에 투입된 비용	사업별 예산 범위내 지급

③ 유의 사항

1. 지원금 지급 제한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지원 사업 취소, 회수, 지급대상 제외
 - 연구개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 - 진행상황 확인 및 보고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 -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,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

2.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- 본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, 기술, 제품 및 특허권, 지적 재산권을 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, 허여 및 판매 금지

3. 공모 제한

- 지원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사유에 의하여 사업에 제한을 받거나 제한 받은 자는,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

4 관련 근거

1. 재단 정관 제1장 제4조(사업)
2. 연초재단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 - 내부결재('18. 7. 23)

- 관련 서식 -

[서식 제1호] :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신청서

[서식 제2호] :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계획서

[서식 제3호] : 확 약 서

[서식 제4호] : 영농기술연구개발 사업 결과 보고서(중간, 최종)

[서식 제5호] :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서

[서식 제6호] : 연구개발비 지원금 신청내역서

[서식 제7호] : 시험잇담배 보상금 신청서